

목차

I. 장애인학대

- 04 1. 장애인학대의 정의
- 05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II. 장애인학대 인지시 업무협력

- 07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통보
- 11 2. 현장 동행 출동

III.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지원 등

- 12 1.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제도
- 13 2.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 14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 신고인 보호

IV. 장애인 수사시 참고사항

- 15 1. 지적장애인
- 16 2. 자폐성장애인
- 17 3. 정신장애인
- 17 4. 뇌병변장애인
- 18 5. 청각·언어장애인

V. 법령 적용시 고려사항

- 20 1.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 21 2. 가중처벌
- 21 3. 양벌규정
- 21 4.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VI.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2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 23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지원

VII. 유관기관

- 25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26 2. 아동보호전문기관
- 26 3. 노인보호전문기관

I 장애인학대

1.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그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중복학대)되는 사례가 많음

장애인학대 유형

| | |
|--------|---|
|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감금, 살인, 가정폭력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정서적 학대 |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괴롭힘, 학교폭력 등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성적 학대 | 성희롱, (준)강제추행, (준)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 경제적 착취 | 노동력 착취, (준)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
| 유기·방임 |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보호의무자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장애인학대는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제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행위자 역시 타인 → 기관종사자 → 가족 및 친인척 순으로 많이 나타나며, 중복학대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가 많이 발생함

- 아동·노인학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임¹

경제적 착취의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노동력 착취), 장애인의 돈을 관리해주겠다고 하며 가로채거나 마음대로 소비하는 행위,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음

¹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참고

장애인학대 알아보기



학대 피해자
70%이상이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주요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학대,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순으로 많이 나타남



주요 행위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지인, 부모



주요 발생장소
집,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및 일터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²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성매매강요 등이 포함됨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²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0.12.29.)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2021.6.30.부터 시행

-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1호의 죄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서 폭행, 상해, 유기, 체포·감금, 협박, 약취,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의 범죄는 아동학대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도 포함되는 학대행위임

이외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는 장애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함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증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위계·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신질환자의 유기,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입원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범죄

II 장애인학대 인지시 업무협력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통보

경찰관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이 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이와 관련, 경찰청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협의를 통해 장애인 사망, 장애인 상해, 가정폭력, 시설내 학대, 중대사건을 통보 대상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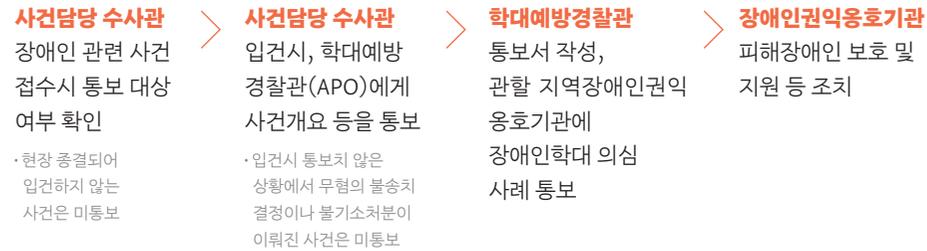
통보 대상 사건

| | |
|--------|---|
| 장애인 사망 | 살인, 자살, 상해, 폭행, 감금,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 실족사 등 단순 사고사, 교통사고 제외 |
| 장애인 상해 |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중상해, 성범죄에 따른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지극히 경미한 상해, 단순한 과실 치상, 교통사고 제외 |
| 가정폭력 | 피해자가 장애인인 가정폭력으로 피해장애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일방적·상습적으로 폭력이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일회성 다툼 등으로, 입건치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은 제외 |
| 시설내 학대 | 거주시설, 이용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된 경우 |
| 중대사건 | 언론 보도사건, 노동력 착취 사건*, 장애인 피해자 3명 이상 *약취, 유인, 공갈, 감금, 준사기 등 장애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단순 임금체불 사건은 제외) |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통보대상인 경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보

통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통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경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통보의무가 있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

신고를 받았을 때 곧바로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사건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통보하는 것으로, 현장종결 사안은 제외하고 입건 시점에 통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질문 3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로 현장 출동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동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 통보의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라 동행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사건내용 공유를 위해 통보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동행 요청을 위하여 꼭 사건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통보 이후 어떤 지원을 하나요?

답변 피해자와 보호자 등을 만나 조사와 상담을 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통보서 | | | | | | |
|---|---|--|------|---------------|-----------------------------------|--------------------|
| 신고접수일시 | | 20 |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 담당 수사관 | 소속 | ※과, 계(팀)까지 표시 |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발생일시 | 20 | | 발생장소 | | | |
| 최초 신고자 | 피해자와 관계 | [] 본인 [] 가족·친인척 [] 타인 () | | 성별 | [] 신고의무자 () [] 기타 () | |
| | | | | 직업 (구체적으로) | | |
| 학대행위 의심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 | | | 성별 | | |
| 피해장애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연락처 (본인) | |
| | 장애 유형 | | | 성별 | 연락처 (기타) | ※기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
| | 주소 (현재지) | ※피해자 주소지를 기재하되 피해자 현재지와 다른 경우 현재지를 기재 -특히, 쉼터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경우 | | 학대행위자 관계 | | ※구체적으로 기재 |
| 사건개요 (신고내용) | <사건개요> | | | | | |
| | <조치 및 수사상황> ※경찰에서 취한 조치 및 입건, 피의자 구속, 송치 등 수사 진행상황을 간략히 공유 | | | | | |
| | <특기사항> ※타 기관 통보, 피해자 상황 등 특별히 기재가 필요한 사항과 기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요청사항 등 기재 | | | | | |
| 20 년 월 일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통보서 | | | | | | |
|---|--|---|-----------------|------------------------------------|-------------|----------------------|
| 신고접수일시 | 2021. 6. 15. 21:30 | |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
| 담당 수사관 | 소속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 직위 성명 | 경위 홍길동 | 연락처 | 032-123-1234 |
| 발생일시 | 2021. 6. 15. 21:10 | | 발생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0, 주안역 인근 골목 | | |
| 최초 신고자 | 피해자와 관계 | []본인 []가족·친인척 [V]타인 (피해자의 친구) | 성별 | 여성 | | |
| | | | 직업 (구체적으로) | []신고의무자 () [V]기타 (학생) | | |
| 학대행위 의심자 | 성명 | 이폭력 | 생년월일 | 2000. 3. 20 | 연락처 | 010-0234-0234 |
| | | | 성별 | 남성 | | |
| 피해장애인 | 성명 | 김가을 | 생년월일 | 2003. 12. 23 | 연락처 (본인) | 010-4321-4321 |
|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성별 | 여성 | 연락처 (기타) | 어머니 010-9876-4321 |
| | 주소 (현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화로 123-13 현재 인천00병원에 입원한 상태 | | | 학대행위자 관계 |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친구 |
| 사건개요 (신고내용) | <사건개요> 신고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됨. 피해자와 신고자는 3일 전 가출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학대행위자를 소개받았고, 15일 낮부터 만나 함께 놀았음. 신고자가 통화를 하고 화장실에 가는 동안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놀자고 하며 몸을 만졌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침을 뱉자 행위자가 피해자를 폭행. 피해자는 안면이 함몰되고 다리가 심하게 부은 상태임. | | | | | |
| | <조치 및 수사상황> 112신고 접수되어 주안역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하여 행위자 임의동행함. 피해자는 보호자 연락하여 병원에 입원. 입건하여 사건 진행 중. | | | | | |
| | <특기사항> 피해자 아동으로 미추홀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 실시. | | | | | |
| 2021년 6월 16일 인천미추홀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경위 오경위(서명 또는 인) | | | | | | |

2. 현장 동행 출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이 경우 서로 동행하여 출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 피해자에 대한 응급보호나 의료기관 인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하거나 조사방해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상호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III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지원 등

1.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제도

1] 피해자 변호사 제도³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

2] 보조인 선임

피해자가 경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할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3] 신뢰관계인 동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사시 피해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등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구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피해자 조사 시 반드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함(단, 예외 사유 있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등**

³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20.12.29.)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신설되어, 2021.6.30.부터 시행

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0) 참고

2.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⁴

장애인 사법지원은 모든 장애인이 사법 절차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도, 장애가 의심될 때에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사법지원의 종류

- 물적 지원: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등
- 인적 지원: 수어통역, 활동(이동)보조인력, 의사소통조력인 등

장애인 사법지원 인력

| 구분 | 신뢰관계인 | 의사소통조력인 | 진술조력인 |
|-------|---|--------------------------------|--|
|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발달장애인법 제12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 성폭력처벌법 제3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
| 역할 |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사 시 동석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움 |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도움 |
| 자격 | 피해자의 가족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격 없음) | 누구나 (자격 없음) | 법무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진술조력인으로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함 |
| 지원 대상 | 모든장애인 (피해자, 피의자, 장애등록 여부 무관) | 모든장애인 (피해자, 피의자, 장애등록 여부 무관) |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
| 비고 |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함 | 신뢰관계인이 일부 의사소통을 돕는 경우가 많음 | 필요시 진술조력인이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음 |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 신고인 보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고인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IV 장애인 수사시 참고사항

1. 지적장애인⁵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늦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적응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추론,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판단,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에 어려움을 가짐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로 등록되어도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의사소통시 단어의 뜻과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질문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답하거나,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그림카드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피해자가 조사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한 말을 피해자의 진술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상황파악이 어렵거나 질문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가 의심될 때는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장애판정을 위한 임상심리평가를 받도록 해야 함



의사소통에 유용한 TIP

지적장애인

- 반복된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주의집중력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휴식시간을 제공함

⁵ 지적장애인 대상 수사매뉴얼 연구(2014) 참고

- 질문은 짧고 단순하며 개방형으로 함
- 계속해서 “예”라고만 답하는 경우 질문의 형태를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누가 했었나요? 네. OO씨가 했었나요? 네. OO씨가 안했었나요? 네.
- 피해자가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함
- 피해자가 일반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함

2. 자폐성장애인⁶

자폐성장애인은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

자폐성장애인의 행동적 특성은 나이, 지적 수준, 언어 능력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편차가 매우 큼

많은 자폐성장애인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언어지면, 말에 대한 이해력 부족, 반항어* 등이 나타남

반항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자폐성장애인은 새로운 장소나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 익숙한 일상을 뒤엎는 사건이나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



의사소통에 유용한 TIP

자폐성장애인

-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정함
- 수사가 진행되는 장소, 절차, 과정을 미리 안내하고,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함
- 흥분하거나 통제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보호자에게 미리 확인함
단, 보호자에게 확인하더라도 흥분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원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조사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자폐성장애인 조사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개방형 질문에 반응하지 못할 때 한가지씩 직접적으로 질문함
오늘 점심은 어떤 것을 드셨고, 어디서 오셨는지 이야기 해주실래요? 보다는 ‘점심은 무엇을 드셨나요?’,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여기 오는데 몇 분이냐 걸리셨나요?’로 질문함

6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사면담 시 유의할 점에 대한 고찰(2019),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2015) 참고

3. 정신장애인⁷

정신장애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복지법상 조현병(망상, 환각 등이 주증상), 양극성 정동장애(조증과 우울증이 주증상),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조현병의 증상과 조증 또는 우울증이 함께 나타남)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나, 다른 장애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 시간, 대화 상대자의 태도, 질문 등에 쉽게 당황하거나 긴장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폭력적 행동이 흔하지는 않으나, 간혹 정신질환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음



의사소통에 유용한 TIP

정신장애인

- 조용하거나 분리된 공간(혹은 안정감을 주는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함
- 짧게 질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적절한 휴식을 제공함
- 망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이에 대해 동조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들 어준 뒤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함
- 피해자가 흥분하여 폭력적인 신호*를 보이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중단함
얼굴이 붉어지거나 언성이 올라가고,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반복적으로 쥐는 등
-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4. 뇌병변장애인⁸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 손상 등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을 말함

뇌병변장애인 중 근육의 경직, 변형 같은 운동성 장애로 인해 말을 하거나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긴장이 되면 근육이 더욱 경직되어 말을 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음

7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2015) 참고

8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누리집 (www.scom.or.kr) 참고

뇌변장장애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등 여러 장애 유형을 중복으로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가 동반되는 때도 있으나 항상 지적·자폐성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서는 안 됨



의사소통에 유용한 TIP

뇌변장장애인

-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므로 의사소통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함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함
- 의사소통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함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예, 아니오를 설정하여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함
예- 눈깜빡임 / 아니오-고개젓기 등

◆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음
- 뇌변장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전 장애유형(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변)이 지원대상임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 말과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제약을 고려해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함
- 의사소통 방법에는 간단한 수어나 제스처, 필담,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표현을 돕거나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음
- 비전자 방식의 의사소통 도구에는 몸짓 상징, 의사소통판, 의사소통 사전, 파워카드, 시각스케줄 등이 있음
- 전자 방식의 도구로는 스위치(녹음도구), 마이토키(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스마트폰 앱(진소리, 스마트AAC) 등이 있으며,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음

5. 청각·언어장애인⁹

청각장애는 소리와 말을 듣는 귀의 청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언어장애는 발음, 유창성(말더듬), 음성(소리), 화용(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함

언어장애인은 말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압박감을 느끼면 더욱 느려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함

많은 청각장애인은 청력에 따라 보조도구(보청기, 인공와우 등)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수어 이외에 구화*, 필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므로 선호하는 의사소통방식

⁹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2013), 장애인실태조사(2017), 손말이음센터 누리집 (mail.relaycall.or.kr) 참고

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구화 청각장애인이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표정을 보고 이해하여 대화하는 방법

수어를 희망하는 경우, 조사가 장시간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수어통역사(농통역사) 2인 이상이 참석하거나 수어통역사(농통역사)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

수사상 발생할 수 있는 통역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통역 과정은 모두 녹화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하며, 낮은 문해율을 고려하여 작성된 서류는 수어통역사(농통역사)의 통역하여 수어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음



의사소통에 유용한 TIP

청각·언어장애인

- 청력의 정도를 미리 확인하고,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한국수어통역사, 농통역사, 동행인 등)을 확인함
- 선호하는 보조도구(노트북, 스마트AAC 등)를 파악함
- 수어를 희망할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어통역과 속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충분한 시간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고, 답변을 재확인하여서는 안 됨
- 수어통역사가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과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며 조사를 진행함
-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함

◆ 수어통역센터

- 전국 200여 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보건복지부)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어통역비 지급은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규정

◆ 손말이음센터(107)

- 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중계하는 센터
- 이용절차: 청각·언어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 중계사와 연결 → 중계사가 경찰관에게 전화 연결 → 중계사가 대화를 중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거리 영상수어통역은 최대한 삼가야 할 것

V 법령 적용시 고려사항

장애인학대는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됨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와 벌칙, 가중처벌, 양벌규정, 취업제한 등 처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1.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장애인학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해야 함

금지행위 및 벌칙

| 금지행위(제59조의9) | 벌칙(제86조) |
|---|---------------------------|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
|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당영리행위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제8조 제2항)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7조)에 처해짐

2. 가중처벌¹⁰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의 장과 종사자를 말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3.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또는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대표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89조

4.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¹¹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법원에서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인 및 의료기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수교육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되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됨

¹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0.12.29.)으로 가중처벌 조항 신설, 2021. 6. 30.부터 시행

¹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0.12.29.)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신설 및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2021. 6. 30.부터 시행

VI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2017년부터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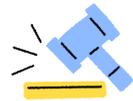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전국공통)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장애인학대사례판정 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 미등록장애인도 지원함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 등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여 입소를 지원하고, 치료나 즉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이송)
- 복지지원: 미등록장애인의 신속한 장애인 등록절차 지원 및 지자체 긴급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 연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신속한 장애등록과 장애 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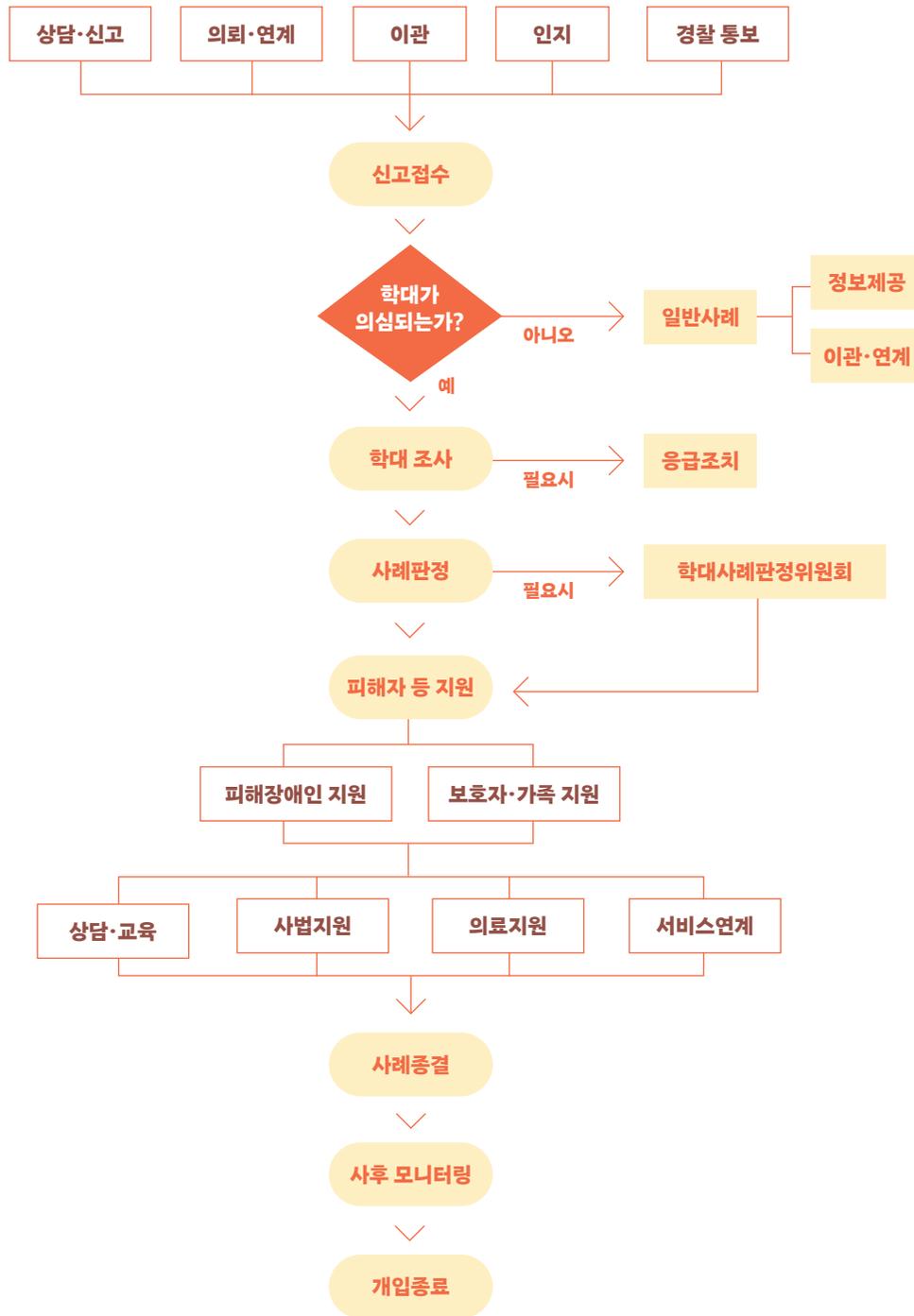
- 의료지원: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기관 혹은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 연계)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 절차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지원
- 사후관리: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로, 전국 1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2021년 하반기 1개 쉼터(전북) 추가 개소 예정임
- 입소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 체계도



II 유관기관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으로 주요 사업에는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권리구제 지원,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등이 있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신고접수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법 제14조 형법상 유기, 학대, 약취·유인·매매 등(동 범죄의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살인, 부동의 낙태, 성매매처벌법상 금지행위, 가정폭력범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사법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나 공공후견인 선임절차 지원 등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로 문의

- 설치현황과 연락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확인

2.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예방,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체계가 개편되며 담당업무가 조정됨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업무는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장애가 있는 아동도 지원

3.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체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유사하며,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함

-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도 지원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기관명 | 전화·팩스 | 대표 메일 | 주소 |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2-6951-1790 F 02-6951-1799 | naapd8295@naapd.or.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
|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2-3453-9527 F 02-3453-9528 | seoul16448295@gmail.com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51-715-8295 F 051-715-8297 | bsaapd8295@bsaapd.or.kr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53-716-8295 F 053-716-8290 | daapd@daapd.or.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32-425-0900 F 032-425-0990 | icaapd@hanmail.net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01호 |
|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62-716-1633 F 062-716-1638 | gaapd2017@hanmail.net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42-631-5667 F 042-637-5669 | djaapd@hanmail.net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
|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52-260-8295 F 052-260-8297 | uaapd8295@uaapd.or.kr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
|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44-905-8295 F 044-905-8298 | sj-ongho@naver.com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 |
|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31-287-1134 F 031-293-2388 | ggaapd@hanmail.net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208호 |
| | | | 관할 지역(21):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31-851-1007 F 031-851-1008 | ggndrc@gmail.com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
| | | | 관할 지역(10):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
|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33-264-8296 F 033-264-8297 | gwaapd@naver.com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
|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43-287-8295 F 043-287-8296 | cb2878295@hanmail.net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 |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41-551-8295 F 041-551-8297 | cn8295@naver.com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 |
|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63-227-8295 F 063-227-8290 | jbaapd@hanmail.net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11-10, 경희궁빌딩 5층 |
|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61-285-8298 F 061-800-8889 | 2858298@drj.or.kr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33, 힐링타워 2층 |
|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54-282-8295 F 054-282-8296 | gb231007@hanmail.net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
|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55-603-8295 F 055-608-6295 | gnaapd@gnaapd.or.kr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 |
|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 T 064-900-9695 F 064-900-9795 | jaapd@jaapd.or.kr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굴로5길 21, 1층 |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



9 791197417726
ISBN 979-11-974177-2-6

발행처 경찰청,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행인 은종균 **편집인** 김현정

발행일 2021년 6월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누리집 www.naapd.or.kr